송·변전 설비·공항·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7. 10.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 2

1. 추진 개요 ····· 2
2. 주민지원사업 현황 ·····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6

Ⅳ.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7

1. 사업비(착륙료) 별도계정 관리 규정을 통한 이자수익 누락 방지 ····· 7
2. 지원금 집행 관리 강화로 재정운영의 객관성 확보 ····· 12
3. 관리·감독 강화와 사후평가 도입으로 사업운영 내실화 ····· 19
4.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체 운영 ····· 26
5. 중요 정보 외부 공개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32
6.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사업운영의 신뢰도 제고 ····· 35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 39

Ⅰ 추진 배경

< 관련 보도사례 >

√ OO지역 마을발전위원장, 억대 주민지원금으로 고급차 구입 등..['15.9월 언론보도]

- 마을발전위가 발주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 8천만원을 부풀려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지원기금 1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

□ 정부는 전력사업, 폐기물 매립지 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실시

○ 대부분의 사업은 상위법령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 전력 기금, 보조금, 법정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공직유관단체 또는 지자체가 시행

* 공직유관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의 연간 재정 규모 : 약 3,500억원(최근 3년 평균)[1)]

□ 그러나, 주민지원사업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각종 부패,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상위법 등에 회계 투명성, 사업 관리·감독, 사업선정의 객관성 등을 담보하는 규정이 매우 부실

- 사업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재정누수 발생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 주변 지원사업의 재원인 착륙료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이자수익금 약 8억 9백만원을 주민지원사업비에서 누락('17.3, 권익위 실태 조사)

-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승인되어 현장에서 지출되는 등 사업관리 사각지대 발생

※ △△시 등 15개 지역에서 '16년 사업비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건에 대하여 OO공사에서 사업 승인을 하였고, 약 26백만원이 적십자회비로 납부('17.3, 권익위 실태 조사)

□ 따라서, 각종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운영과정의 **부패유발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재정누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 개선방안 마련**

1) 공직유관단체 209개 서면조사 시 기관별 제출자료 재구성

Ⅱ 부패영향평가 실시 개요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새정부 국정기조인 **“국가예산 낭비 예방”**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 도출

□ 추진경과

○ ‘16년도 청렴도측정 공직유관단체(209개) 대상 전수 서면조사 : ’17. 1~2월

-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개 기관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

< 주민지원사업 실시 현황(1차 서면조사 결과) >

◈ 기관별 현황(15개 기관, 연평균 약 3,500억원 집행)

구 분	기관 명	주요 법령
산업 분야(3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송전설비주변법령
국토·수자원 분야(3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항소음방지법령
환경 분야(2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폐기물시설촉진법령
발전소 분야(7개)	남동발전 등 6개 발전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발전소주변지역법령

○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 ’17. 3~6월

< 평가 대상 기관(18개) 선정 >

√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1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된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매립지관리공사 등 3개 공직유관단체를 부패영향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 사업계획 승인 등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주무부처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12개 지자체도 병행 평가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자체(12) : 서울 양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부산 강서구, 김해시, 여수시,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제주특별자치도

○ 개선권고(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실시 : ’17. 7~8월

2 주민지원사업 현황

□ 개 념

○ 송·변전설비, 공항, 폐기물 매립시설 등의 설치로 예상될 수 있는 주변 지역 거주 주민들의 각종 불이익에 대해 행해지는 재정지원

예시) 주민소득증대 지원, 주민복지증대, 각종 장학금, 마을 시설보수 등

< 주변지역 선정 예시 >

√ 공항소음 주변 영향 지역

-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감안,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 김포시 풍무동, 제주시 도두동, 울산 송정동, 서울시 신월동 등

√ 수도권 폐기물처리 설치지역 주변 영향 지역

- 수도권매립지 공사가 환경상영향조사 결과와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
  ※ 인천광역시(오류동·왕길동·경서동 일부), 김포시(양촌읍 일부)

□ 사업 현황 및 지원규모

○ 개별법령에 따라 공직유관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자체 등에 지원하여 주민지원사업 실시

< 법령·기관별 사업 운영 현황 >

연번	근거 법령[2]	공직유관단체[3] (주무부처)	해당시설	주요 사업	시행자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변전소	▪ 장학금 지급 ▪ 문화행사체험	공사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공항 (김포, 김해 등)	▪ 냉방시설 설치 ▪ 복지 시설 지원	공사 지자체 (일부 매칭)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환경부)	폐기물 처리 시설 (수도권매립지)	▪ 환경개선 사업 ▪ 장학금 지급	공사

2) 이하에서는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지칭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송전설비주변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은「공항소음방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은「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3) 이하에서는 기관명칭을 다음과 같이 지칭함 :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으로, 한국공항공사는 '공항공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관리공사'로 함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연간 약 1,500억원이 집행되며, 공항소음 주변지역 주민에 연간 약 420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에 연간 약 160억원 집행

(단위 : 억원)

연번	기관 명	재원	연평균	2014년	2015년	2016년
1	한국전력공사	자체예산	1,510	-	1,448	1,573
2	한국공항공사	국고보조	106	151	85	81
		착륙료	318	405	363	186
3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반입 수수료	161	149	196	139

□ 추진 체계

○ 주무부처(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 각각 법령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근거로 사업 시행·관리

< 업무 현황 >

기 관 별	주요 업무 내용
주무부처	▸ 법령 제정·운영, 사업 계획 승인, 결산확인, 관리·감독 등
공직유관단체	▸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결산보고, 자체 정산 등
지방자치단체	▸ 지원금 수령 후 사업 집행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자체에 해당(김포시, 부천시 등 12개 지자체)
주 민	▸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금 수령후 집행

○ 상위 법령에 따라 계획 수립·승인, 결산, 사업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

- 공직유관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후 주무부처에 승인을 요청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등을 거쳐 사업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

< 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 >

① 사업계획 수립	⇨	② 사업계획 승인	⇨	③ 사업비 집행	⇨	④ 사업결과 보고
공직유관단체		주무부처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마을)		공직유관단체 ⇒ 주무부처

<참고>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 분야별 현황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

○ 한전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

< 사업 추진 절차 >

① 계획 수립	② 계획 승인	③ 사업비 집행	④ 사후정산	⑤ 결과 보고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해당마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2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 사업

○ 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일부 사업은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 사업 추진 절차 >

① 계획 수립	② 계획 승인	③ 사업비 집행	④ 사후정산	⑤ 결과 보고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 국토교통부

3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 사업 추진 절차 >

① 계획 수립	② 계획 승인	③ 사업비 집행	④ 사후정산	⑤ 결과 보고
매립지관리공사	매립지관리공사 주민지원협의체	매립지관리공사 해당마을	매립지관리공사	매립지관리공사 ⇒ 환경부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 총 평 >

◈ 송변전설비, 공항,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지원금 정산 등 집행관리, 관리·감독과 사후관리, 내부 부패 통제장치 등 3개 분야에 집중된 유사 부실사례가 확인되었기에 상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

	문제점	개선방안	대상법령
재정 관리	1. 사업비(착륙료)에 대한 이자 수익 누락으로 재정운용의 불투명 초래	1. 착륙료 이자수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항소음방지법
	2. 재정집행에 대한 통제수단 미비로 집행관리 부실 초래	2-1 구체적 정산절차와 장기 미집행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공항소음방지법
		2-1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 규정 마련	송전설비주변법 공항소음방지법 폐기물시설촉진법
관리 감독	3. 부실하고 형식적인 사업 관리·감독에 따른 재정 낭비 초래	3-1 주기적인 사업수행 실적 보고와 실태점검 등 강화	공항소음방지법 폐기물시설촉진법
		3-2 사후 평가 체계 마련	공항소음방지법
사업 집행	4. 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부재로 부패발생 소지	4.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송전설비주변법 폐기물시설촉진법
	5. 중요 정보 실적 공개 규정 부재로 사업 투명성 저해	5. 주민지원사업 관련한 중요 정보 공개 의무화	송전설비주변법 공항소음방지법
	6. 주민의견 수렴 절차 규정 부재로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운영	6.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 규정 마련	공항소음방지법 폐기물시설촉진법

Ⅳ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 사업비(착륙료) 별도계정 관리 규정을 통한 이자수익 누락 방지

■ **평가대상 조문** : 공항소음방지법령

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 황

○ 「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금과 소음부담금, 항공사가 납부하는 착륙료의 75%를 공항공사가 사업재원으로 조성

- 공항공사는 최근 3년간 약 1,271억원(국고지원 약 74억원, 소음부담금 약 243억원, 착륙료 약 954억원)을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투입

< 공항소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국고지원	7,390	7,390	-	7,390	7,390	-	-	-	-	-	-	-
소음부담금	24,346	24,346	-	7,700	7,700	-	8,500	8,500	-	8,146	8,146	-
착륙료	121,301	95,451	25,850	40,685	40,548	137	37,731	36,303	1,428	42,885	18,600	24,285

('17.3, 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타 유사사업의 경우에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정 조항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

< 기관별 별도계정 관리 실태 ('17.3, 권익위 실태 조사) **>**

◈ 주민지원사업비 계정 관리 현황

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공사**	공항공사
별도 관리	별도 관리	별도관리 규정 부재

* 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는 사업재원인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별도계정으로 관리
- 직전년도 징수된 수수료의 10%가 차년도 사업비로 집행되며 사업 재원은 시중은행 예금으로 별도 관리 ※ 이자수익 약 4천만원 발생('16.)

** 수자원공사의 경우는 사업재원인 발전판매 수입금 등의 일부를 별도계정으로 관리
-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 등의 일부가 차차년도 사업비로 집행되며 사업 재원은 시중은행 예금으로 별도 관리 ※ 이자수익 약 4억2천만원 발생('16.)

○ 공항공사는 착륙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정 전입 없이 관리**, 수시로 공사가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사업[4]에 자체 사용하거나 지자체에 자금 지원

※ 다만,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계정으로 관리 중, 이에 대한 이자도 매년 사업종료 후 국고에 반납

4)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방음창 등 시설설치를 주로하는 소음대책사업, 관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장학금 지급 등 그밖의 사업으로 구분되며, **이하에서는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칭**

○ 기존 기관 일반계정에서 사업비(착륙료)가 수시로 지출되어 재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매년 누락되고 있음

< (예시) 착륙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에 대한 이자 누락 >

◈ **월별 징수액에 대한 이자누락액 산정**(최근 3년/약 8억9백만원 추정)

(단위 : 백만원)

연 도	항목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착륙료	53,429	3,821	4,082	3,537	4,369	4,733	4,974	4,633	4,803	5,006	4,538	4,624	4,309
	(이자)	**(248)**	**(37)**	**(36)**	**(28)**	**(31)**	**(29)**	**(26)**	**(20)**	**(17)**	**(13)**	**(8)**	**(4)**	-
2015	착륙료	55,913	4,227	4,631	4,338	4,676	4,908	5,177	4,532	4,122	4,814	4,561	5,253	4,674
	(이자)	**(265)**	**(41)**	**(41)**	**(34)**	**(33)**	**(30)**	**(27)**	**(20)**	**(14)**	**(13)**	**(8)**	**(5)**	-
2016	착륙료	63,791	4,722	4,710	4,667	4,913	5,365	5,719	5,551	5,846	5,965	5,556	5,740	5,037
	(이자)	**(296)**	**(45)**	**(41)**	**(37)**	**(34)**	**(33)**	**(30)**	**(24)**	**(20)**	**(16)**	**(10)**	**(5)**	-

('17.3, 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착륙료의 75%가 사업재원으로 조성(매달 19일경 착륙료 징수)
  - 직전년도 징수된 금액의 75%가 차년도 사업의 재원으로 집행됨

예시) 전년도 징수한 착륙료에 대한 월별 이자액 계산
- 1월분 징수액 × 75% × 수시예금통장 이율(1.4%)* × 11/12
- 2월분 징수액 × 75% × 수시예금통장 이율(1.4%) × 10/12

* 공사에서 착륙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관리하는 예금 통장 평균 이율

□ 문제점

《 공항소음 주변지역 》

○ 사업비(착륙료) **이자 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재정운용의 불투명 초래**

- 사업재원인 착륙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매년 일정액의 이자수익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외로 사용[5)]

※ 법령에 별도계정 조항이 없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사업재원의 이자수익은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개선방안

○ 착륙료 이자수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착륙료를 **별도 계정으로 운영·관리하고** 이자수입을 주기적으로 계상후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

5) 이자수익이 기관 일반계정으로 관리되어 지출처를 특정하기는 불가능

□ 개선 예시(공항소음방지법령)

현 행	개선안(예시)
<공항소음방지법>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제23조(자금) ① 현행과 같음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 신 설 >	4. 제3호에 따라 시설관리자가 조성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신 설 >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설관리자가 조성한 자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 신 설 >	제OO조(사업비 관리 등) ① 법 제O조에 따라 조성된 착륙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計定)으로 관리하고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 본 평가서의 '개선안(예시)'은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에 불과하므로, 개선취지의 반영을 전제로 하여 **소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수정·삭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함.[이하 '개선안(예시)'도 같음]

< 유사 입법례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 3. 생략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지원금 집행 관리 강화로 재정운영의 객관성 확보

2-1 구체적 정산절차와 장기 미집행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 평가대상 조문

해당 법령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 황

○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미이행하거나 장기간 미집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항은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미규정

○ 통상 공사가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지자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자체정산하거나 지자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정산

※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자체 검증 후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최종 확정

○ 세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가 지연·누락**되거나 **지원금 장기 미집행 등 일부 부실 사례** 발견

- 지자체 등의 정산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산이 지연되거나, 주민들간 사업 갈등으로 사업이 미착수되어 장기간 지원금이 미집행중인 경우도 발생

※ 지자체 등의 정산서류 제출 지연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와 공사에서 시행한 제재는 거의 없는 실정

< 정산 서류 미제출 및 장기 미집행 현황(최근 3년간 진행된 사업대상) **>**

(백만원)

정산기관	구 분	지자체	관련 내역				
			사업 명	사업결과	지원액	집행액	제재조치
공항공사	정산 서류 미제출 (20건)	○○시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4건('15.)	종료	170	정산지연	-
		◍◍시	○○천 산책로 조성 등 8건('15.)	종료	203	정산지연	-
		△△시	○○마을회관 개보수 등 8건('15.)	종료	149	정산지연	-
	장기 미집행(7건)	■■시	○○마을 체력단련기 교체 *'14.3월에 지원	미시행	23	-	회수('15.8.)
			○○문화센터 건립 *'15.12월에 지원	진행중	1,198	-	-
			○○동 농산물저장고 신축 *'16.6월에 지원	미시행	53	-	회수예정
		▨▨시	○○아파트 마을도서관 *'14.12월에 지원	미시행	52	-	회수예정
		◎◎시	○○마을회관 건립 등 3건 *'15.12월에 지원	미시행	303	-	회수예정

('17.2, 권익위 실태 조사)

※ 공항공사와 공항소음주변지역 지자체 제출 자료 재구성

⇒ 지자체 등의 정산서류 미제출건은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중에서 선별하였고, 장기미집행건은 지원금 지급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중에서 선별

□ 문제점

《 공항소음 주변지역 》

○ 사업비 정산업무 소홀 등으로 **예산집행의 불투명 초래**

- 정산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자체정산을 누락할 경우, 지원금의 유용 가능성이 있고, 정확한 결산 내역파악이 불가능

< 정산업무 부실 사례 >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자체중 ○○시의 경우 공사로부터 '15년에 9개 사업 약 4억3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진행중인 1건을 제외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경과된 8개 사업의 정산서류 미제출

* 권익위 실태 조사 후 ○○시는 미제출한 정산서류를 공항공사에 제출('17.3.)

⇒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계획 승인권자인 지방항공청과 사업비 지원기관인 공항공사에서 연 1~2회정도 지자체 집행점검을 실시하나, 실효성이 부족하여 관리 사각지대 발생('17.2, 권익위 실태 조사)

○ 장기 **미집행사업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예산낭비 소지**

- 지원금 수령후 타당한 사유없이 장기간(6개월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시 연도말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

※ 장기 미집행건은 결국 당해 연도 해당 지역 사업의 장기간 공백 초래로 해당 주민들의 정책 수용도를 저하시킬 우려

□ 개선방안

○ 정산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정산절차 마련

-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사업종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한 **집행결과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내 제출**토록 의무화

< 유사사업 정산 수범 사례 >

◈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중 '소양강댐' 지역**

√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춘천시 등 5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총 173건의 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을 제외한 종료사업 총 146건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1달 이내에 정산절차가 완료됨

√ 공사에서 지자체에 징구하는 서류 : 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 현장실사 사진 등

○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사후 통제 수단 마련

- 지급된 지원금을 즉각 회수하거나 미집행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차년도에 미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행

※ 궁극적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정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

< 현장 관계자 의견 >

√ 일부 지역에서 주민갈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착수가 되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적절한 사후 통제장치가 법령 등에 없어 그간 방치된 측면이 있는건 사실임. 권익위의 집행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에 전반적으로 공감(▨▨시 주민지원사업 담당)

□ 개선 예시(공항소음방지법령)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OO조(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관(지자체 등)은 회계연도 종료 O개월 이내에 종료사업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집행실적보고서를 OO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OO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O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사 입법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2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 규정 마련 등

■ 평가대상 조문

해당 법령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 황

○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등 제재조항은 송전설비 주변법령 등 3개 법령 모두 부재

○ 당초 주민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원금이 집행되는 경우 발생

- 일부 사례의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가 시행되었으나, 반납절차가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고, 환수절차를 미시행한 건도 있음

< 지원금 부적정 집행 사례 >

√ OO시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OO공사로부터 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6,300만원 상당의 식사권 등을 구매한 사실이 사후 적발['16.7월 언론보도]

⇒ OO공사에서 '16.10월에 환수 요구하였으나, 미회수 상태('17.6, 권익위 실태 조사)

√ ▽▽공사가 目目시 ◎◎마을 공용창고 신축건으로 3억6천5백만원을 目目시에 지원('12~'13.)하였으나, 준공후 일부 마을 주민들이 시설을 개조, 음식점으로 영업한 사실이 공사와 지자체가 '14년도에 실시한 합동 점검시 적발('17.3, 권익위 실태 조사)

⇒ '15년초에 환수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환수가 되지 못하고 '16년 말에 마을에서 지자체로 지원금을 반납하였고, 지자체에서 공사로 지원금 반납을 위한 절차 진행중

√ OO지역 주민지원기금 횡령, 마을발전위원장 구속['15.6월 언론보도]

- A씨는 마을발전위가 발주한 다가구주택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가로채는 등 주민지원기금 1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음

⇒ OO공사에서는 상기건의 목적외 사용분에 대한 환수절차 검토중('17.6, 권익위 실태 조사)

□ 문제점

《 송변전설비·공항소음·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

○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로 **도덕적 해이 지속적으로 발생**

- 통제장치가 미비할 경우 사업 집행관리의 투명성이 저하되며 실제 지원금 사용자의 책임성 결여 문제 발생

- 환수조치 후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환수절차 진행시 강제력을 부여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

□ 개선방안

○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 등 제재 방안 마련**

-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의무화하고, 환수조치 불응시 차년도에 지급 예정인 사업비를 차감하는 방안 등 강구

< 현장 관계자 의견 >

√ 공항소음주변지역 사업관련 일부 목적외 사용건에 대하여 마을대상으로 환수조치 등을 실시하였으나 관련 절차가 상위법령에 없다보니 이행력 확보가 다소 어려워 후속절차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시 주민지원사업 담당)

□ 개선 예시(송전설비주변법, 공항소음방지법, 폐기물시설촉진법)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OO조(지원금 환수 등) ① OO은 지원금을 받은자가 당초 사업계획에 정해진 목적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고,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치 기한내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OO은 관련 사항을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협의체 등)에서 논의하여 목적외로 사용된 부문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유사 입법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원금의 관리)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하며, 제2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의뢰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연도에 그 잔액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관리·감독 강화와 사후평가 도입으로 사업 운영 내실화

3-1. 주기적인 사업실적 보고와 실태점검 실시 규정 마련

■ 평가대상 조문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송전설비주변법령에는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공항소음방지법령에는 관련 조항이 부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 황

○ 주무부처의 정기적인 사업운영 실적확인 등에 대한 조항은 송전설비주변 법령과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규정, 공항소음방지법령에는 미규정

- 다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는 매립지 관리공사의 사업 실적 보고 근거 규정이 있으나, 보고의 주기, 형식, 절차 등의 세부 규정이 부재

○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점검 등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소음 주변지역 일부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무

※ 환경부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운영실적 등을 부실하게 확인·점검

< 주무부처 주민지원사업 관리 실태 ('17.3, 권익위 실태 조사) **>**

√ (국토교통부) 공항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음창, 에어컨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은 잡행 점검 후, 감사 결과를 공사에 공식적으로 통보('13, '16.)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현지점검을 연 1~2회 정도 실시하지만 대부분 현지 구두조치, 최근 3년간 지자체로 통보한 시정조치 실적 전무

√ (환경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6항('12.3.30. 신설)에 따라 공사는 주민지원 기금의 운용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주무부처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보고의 주기 등을 정하는 환경부 소관 세부 조항의 입법 미비로 확인·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환경부는 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16년도에 5년치('11.~'15.) 주민지원사업 운영 실적을 단순 보고 받았고, 최근 3년간 공사에 대한 시정조치 실적 전무

□ 문제점

《 공항소음·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

○ 주무부처의 **형식적인 사업 관리 등으로 방만한 사업 운영 초래**

- 연간 사업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정례적인 보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시 전반적인 사업운영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관리 사각지대 초래

- 공사, 지자체 등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실태점검 미실시로 전반적인 사업 운영 검증체계 미작동

< 부실 사업 집행 사례 ('17.3, 권익위 실태 조사) >

① 무분별한 사업관리로 사업취소 빈번

√ OO공사에서 '16년도 ◎◎시에 52백만원을 지원한 ▨▨동 농산물저장고 신축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소유주와 주민간 부지 사용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이 취소됨

√ △△공사에서 '15년도 OO시에 지원한 ▽▽마을회관 건립 등 3건 약 3억원에 대한 사업이 주민간 이견 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됨

② 주민지원사업 취지와 무관한 사업 승인 후 지출

√ ▤▤시 OO마을이 신청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상가매입건에 대하여 '13년도에 △△공사에서 사업승인 후 약 2억9천만원이 지출

③ 부실한 사업준비로 인한 시설물의 장기간 방치

√ ◍◍공사는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민간 보육시설(수용인원 100명)을 '16.2월에 준공하였으나 준공후 약 1년간 방치상태로 있다가 최근에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17.3.)

⇒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관할 지자체가 주관하는 추첨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이 되어야 시설개시를 할 수 있으나 상기 보육시설은 추첨에 계속 떨어져 개장을 곧바로 하지 못함

□ 개선방안

○ 주무부처의 구체적 사업관리 규정 마련

- 연간 사업 운영실적 등을 주무부처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하여 **사업 관리의 책임성 및 실효성 확보**

※ 보고의 주기, 형식은 기관별 여건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하고, 환경부의 경우 보고의 세부 주기·형식 등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제정하여 입법부작위 해소 필요

- **정기적인 사업 운영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책임성 확보

※ 실태점검 방법 등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무부처 고시 등에 반영

< 참고(유사사업 관리·감독 실시 사례)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기반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실시

※ 지자체·발전소가 분기별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지자체·발전소 대상 현지 실태점검 등을 정례적(연간 약 1회)으로 실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통보

예시) OO발전소 대상으로 육영사업비 최종 수령자인 관내 학교에 대한 별도통장 개설 요구('15.)

□ 개선 예시(공항소음방지법령)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OO조(지원사업의 사업관리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 OO가 끝난후 OO일 이내에 OO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등을 OO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OO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OO으로 정한다.

□ 개선 예시(환경부 소관 행정규칙(고시) 제정)

현 행	제정안(예시)
< 신 설 >	제OO조(주민지원기금의 운영실적 보고) ① OO공사는 매 OO가 끝난후 OO일 이내에 OO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OO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기금 조성 세부 내역 2. 주민지원 세부사업별 기금 지출 내역 및 집행율 3. 기타 기금 운영 관련 특이사항 등

< 유사 입법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9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①사업시행자는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마련

■ 평가대상 조문

해당 법령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현 황

○ 주민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의 사후평가 조항은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미규정

-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와 실제 사업의 미흡한 사항을 정책에 지속적으로 환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하여 주무부처가 실시한 사후평가 실적 전무

< 관련 보도 사례 >

√ OO지역 배정 OO공사 주민지원금 놓고 시끌 ['16.1월 언론보도]

- 경남 OO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놓고 지원금 상당액이 행사 등 소비성 지출로 사용되어 불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는 실정

□ 문제점《 공항소음 주변지역 》

○ 사업전반에 대한 **사후 평가 제도 미비로 사업관리 부실 초래**

- 당초 근거법령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주무부처 등이 관리할 수 있는 수단 부재로 주먹구구식 지원이 발생

- 부적정한 사업에 대한 시정·보완 절차 부재시 일회성·낭비성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 일부 지역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장기간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부실 사업 운영 사례 ('17.2, 권익위 실태 조사) >

√ OO공사의 사업중 △△시의 경우 지역주민간 지속적인 갈등과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16년도 사업 총 22건(약 1억5천3백만원) 중 전기요금보조 11건(약 7천7백만원)을 제외한 기타사업 11건(약 7천7백만원) 전부 미착수

√ ㅇㅇㅇ공사에서 OO시 ▽▽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총 1,198백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원('15.4/'15.12)하였으나, 지자체 타당성 용역 등 부속절차 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선정이 되다보니 사업을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하였고, 현재 설계작업 진행중(당초 사업 종료기한은 '16.12월)

□ 개선방안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마련**

-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운영의 책임성 확보

(평가 항목 예시) 사업비 집행률, 주민 만족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세부 방법은 기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자체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의 경우 사후평가 관련 내용이 현재 의원입법으로 소관 상임위 (산업통상위) 심사중

< 참고(사업 평가·환류 체계 운영 사례) >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 법령에 따라 사업 평가를 매년 실시

- 평가 대상 :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발전사업자
- 평가항목(100점, '16년도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5점), 목적달성 및 평가결과의 환류(10점), 사업비 집행률(30점), 자료제출 일정 준수(5점), 주민 만족도(40점)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기반센터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최종 확정
  ⇒ 우수, 보통, 미흡으로 산정후 사업시행 기관 통보

□ 개선 예시(공항소음방지법)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OO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OO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OO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OO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3. 주민만족도 등 OO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OO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 입법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지원사업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
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체 운영

■ **평가대상 조문** :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제12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4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직원 5명 이내
   나. 지역발전 및 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명 이내

③ 생 략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 ⑦ 생 략

■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

□ 현 황

○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체가 사업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송전설비주변법령과 폐기물시설촉진법령 모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부재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의 규정은 심의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표적 규정

< 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

구 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① 기구 명칭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주민지원협의체 (매립지관리공사)
② 주요 업무 및 기능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 지원금 회수 등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 등
③ 주요 위원 구성	중앙행정기관 국장급(3) 사업자 임직원(4) 외부전문가(6)	지방의원(3), 주민대표(14) 외부전문가(2)
④ 연간 회의 개최	약 3회	약 21회
⑤ 제척·기피·회피 규정	없음	없음
⑥ 해촉 규정	없음	없음
⑦ 임기, 연임제한 규정	임기(O), 연임(X)	임기(O), 연임(X)

('17.3, 권익위 실태 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와 매립지관리공사는 연간 주민지원 사업계획 승인·변경, 결산보고 등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를 통해 관련 절차 수행

- 한전에서 연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거쳐 공사가 사업계획 확정

⇒ 공항소음 분야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내 의견수렴을 하도록 **"공항소음 대책위"**가 공항별로 구성·운영중이나 주요 기능은 **단순 자문으로** 분석 제외

※ 공항공사는 지자체 협의 후 연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위의 의견수렴 후 지방항공청에 최종 승인 요청을 하고 있음

□ 문제점

《 송변전설비·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

○ 심의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미비로 **특정위원의 장기간 활동으로 이해관계자와 유착 가능성 내재**

※ OO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실제 A위원은 3회 연임에 총 8년간 위촉, B, C위원은 2회 연임에 총 6년간 위촉('17.3, 권익위 실태 조사)

○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로 위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될 소지**

- 주민지원사업 분야는 연간 지원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며 각종 이해관계 등이 첨예하게 관련될 수 있어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 필요

- 해촉 규정 부재시 비위 발생 위원이 장기간 심의 활동에 참여할 소지 다분

※ 산업통상자원부의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는 한전에서 수행하는 연간 약 1,5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지원금 회수 결정 등 공정성이 매우 필요한 기능 수행

⇒ 타 유사 지원사업과 달리 심의·의결체가 주무부처에 단독으로 설치되어 사실상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 역할을 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유착 방지

○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마련**

- 특정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등 공정성에 차질 발생시 관련 절차 배제를 통한 부패 소지 사전 제거

※ 비위에 연루된 위원의 경우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조치 등도 필요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각 동별로 선출된 주민대표들이 심의 위원의 과반이상을 차지, 대부분 사업이 자신들의 거주지 등에 대한 시설개선비 등으로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실익이 없어 개선안에서 제외

□ 개선 예시(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현 행	개선안(예시)
제12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신 설 >	제12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O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OO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OO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O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OO조(위원의 해촉) ① OO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개선 예시(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현 행	개선안(예시)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O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OO조(위원의 해촉)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유사 입법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3. 생략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② 생략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중요 정보 외부 공개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평가대상 조문

해당 법령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공개성, 예측가능성

□ 현 황

○ 주민지원사업 실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만 규정, 송전설비주변법령과 공항소음방지법령은 미규정

○ 기관별 정보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계획, 결산내역 등 사업 관련 중요 정보 대부분을 외부에 미공개

< 기관별 정보공개 실태 ('17.2, 권익위 실태 조사) **>**

◈ **공개 현황**

구 분	한 전	공항공사
① 사업계획	미공개	미공개
② 선정기준	미공개	미공개
③ 선정결과	미공개	미공개
④ 결산내역	미공개	미공개

√ 한전의 경우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하고 있고, 공항공사 및 공항소음 주변 지역 지자체 대부분 주민지원사업 관련 중요 정보 미공개

□ 문제점

《 송변전설비·공항소음 주변지역 》

○ 사업 관련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 부재로 사업 투명성 저해**

- 사업추진 계획, 선정결과, 결산 등은 투명한 사업을 위한 중요 전제조건으로 외부에 미공개할 경우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보 곤란**

※ 관련 정보를 장기간 미공개 시 사업선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발생으로 주민간 갈등 발생 소지도 있음

< 관련 보도 사례 >

√ 댐·발전소 예산지원 사업의 '허와실' ['14.8월 언론보도]

-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공공기관들이 OO시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년째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여 일부 주민들은 지원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를 행정청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

□ 개선방안

○ 주민지원사업 관련 중요 정보 공개 규정 마련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선정결과, 결산 내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상세 공개하여 **대국민 정보접근성 제고**

< 타 기관 운영 사례 >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사업 결산 내역, 선정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예시) 기관 홈페이지에서 일부 발췌

< 결산내역 부문('15년도 사업)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1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	986	986	100%	사업 완료
2	주니어 공학기술교실운영	17	15	89%	사업 완료

< 사업선정 결과('16년도 사업)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시행자
1	영농기자재 자재 지원	공동이용 지게차구입지원	46	농업 기술센터
2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260	한빛본부

□ 개선 예시(송전설비주변법령, 공항소음방지법령)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제OO조(운영실적 공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수립 후 OO일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결산내역을 포함한 사업집행 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OO일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2. 사업자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④ 생략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6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사업운영의 신뢰도 제고

■ 평가대상 조문

해당 법령 조문 없음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성

□ 현 황

○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에만 규정, 공항소음방지법령과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는 미규정

○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공항공사와 해당 지자체들의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실적 전무(최근 3년)

※ 국토교통부가 공항소음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의 경우 주민 대상 공청회 실시가 법적 의무사항이나,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의견수렴 규정은 부재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경우 매립지관리공사가 마을별 간담회를 실시(분기별)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없어 향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의견수렴 이행 실태 >

√ 공항공사와 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공항별로 설치운영중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매립지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석하는 구역별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라 볼 수는 없음**

※ OO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특정 심의위원들의 장기 연임(6~8년)으로 주민대표 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시행 전반에 골고루 반영되기가 어려운 실정

※ 운영 예시

① 김포공항 공항소음대책위 주민위원은 양천구 대표(4명), 구로구 대표(2명), 부천시 대표(2명), 김포시 대표(1명), 인천 계양구 대표(1명)로 구성

②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위원은 인천광역시(오류동 대표(5명), 경서동 대표(3명), 왕길동 대표(3명)), 김포시 양촌읍 대표(3명)로 구성('17.3, 권익위 실태 조사)

□ 문제점

《 공항소음·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

○ 다수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부재시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운영**

- 의견수렴 부재시 **사업의 방향 및 내용, 사업재원의 규모 등을** 다수의 주민들이 알기 어렵고, 특정계층 주도로 사업이 운영될 가능성 농후

- 지원금 사용처나 마을별 사업비 배분에 대한 주민간 갈등 초래로 사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유발

< 지원사업 관련 주민간 갈등 사례 >

√ OO공사에서 '14. 12월 OO시에 52백만원을 지원한 ▨▨아파트 마을도서관 및 문화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사업 항목 관련한 주민 갈등이 지속되어 사업 미착수('17.2, 권익위 실태 조사)

√ OO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논란, 지원금 분배율, 주민지원협의체 불신·내분 등으로 약 200억원 미집행 ['16.9월 언론보도]

- OO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기금은 ▣▣ 아파트 주민과 OO 아파트 주민들간의 대립으로 '03년 이후 13년간 약 200억원의 기금이 미집행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

□ 개선방안

○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 규정 마련**

- 사업계획 수립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수용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사업시행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현장 설명회나 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참고(주민설명회 실시 사례) >

√ 한전의 경우 최근 2년간('15~16.)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주민대상 설명회를 경기, 부산 등 지역본부에서 총 1,155건 개최('15년 553건, '16년 602건)

※ 설명회에는 주로 사업추진 방향, 전년도 성과,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

□ 개선 예시(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현 행	개선안(예시)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주민복지사업의 내용 3. 소득증대사업의 내용 4. ~ 5. 생 략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선 예시(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현 행	개선안(예시)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 5. 생략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유사 입법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Ⅴ 권고대상 기관 및 조치사항

□ **권고기관**(중앙행정 3)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 **통보기관**(공직유관단체 3, 지방자치단체 12) :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구, 구로구, 서울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부산 강서구, 김해시, 여수시,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제주특별자치도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조치사항	권 고 기 관	조치기한
1. 사업비 별도계정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누락방지	- 착륙료 이자수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18. 12.
2. 지원금 집행관리 강화로 재정운영의 객관성 확보	- 구체적 정산절차와 장기 미집행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국토교통부	'18. 12.
	-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3. 관리감독 강화와 사후평가 도입으로 사업운영 내실화	- 주기적인 사업수행 실적 보고, 실태점검 규정 마련 - 사후평가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18. 12.
	- 주기적인 사업수행 실적 보고 규정 마련	환경부	
4. 이해충돌방지 규정 등을 통한 공정한 심의체 운영	-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18. 12.
	- 연임제한, 해촉규정 마련	환경부	
5. 중요 정보 공개를 통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사업관련 중요 정보 외부 공개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18. 12.
6.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사업 운영의 신뢰도 제고	- 주민의견 수렴 절차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환경부	'18. 12.